

가업상속공제 개편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업을 일찍 떠맡게 된 김장남...

아버지...
제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래...

일단 세무사와
상담해보자



세무사

일단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입니다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고요?

아버지 사업은
27년 밖에 안됐는데...

그렇다면
공제는...!

전문 기술, 노하우의 승계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10 → 30년) 및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요건(5 → 10년)을 상향

그렇지 않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20년이상
경영을 하셨기에

부족한 기간만큼 대표님이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기간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도
부족기간(30년- 피상속인 경영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제가 가능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업종 전환은요?

아버지도 경영하신지 오래 되었다보니
시장 흐름에 맞게 업종 전환을
준비하셨다고는 들었는데...



업종 전환 제한은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둔 것이라

전대표님께서
준비해오신 내용이라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공제대상 업종도
변경되었다 보니
확인해봐야겠지만...



아!

다행히 전대표님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을 받으셨기에

업종은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

- ①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제한을 두지 않고
- ② 가업상속공제 공제 수준은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 으로 대폭 상향

아버지가 준비해오신 덕분에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구나...

그렇다면...



저도 이제부터
제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